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71호

2026년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기업
※ 단, 전문무역상(도외제품), 도 출자·출연기관 제외

< 신청자격 제한 >

- 최근 3년 이내 도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 중도 포기기업
- 동일 지역(현지)에 타 지자체(또는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기업
- 해당 지역에 현지법인(지사)·공장·사무실 등을 두고 있는 기업
- 지방세 체납기업
-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회원사는 동시 지원 불가
- 최근 3년 연속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과년도 사업의 집행마감·실적보고 미수행 기업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해외지사화 지원
- 사업기간 : 2026. 2월 ~ 12월
- 사업비 : 40.5백만원
- 지원규모 : 도내 수출기업 9개사 내외
※ 사업비 한도 내에서 결정
- 선정기준
 - 1차 심사(서류·현장) : 부서 자체심사
 - 2차 심사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원내용 :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의 최대 80%(기업당 6백만원 한도)

3. 신청 및 접수

- 가. 신청기간 : 2026. 1. 12.(월) ~ 1. 30.(금) 18:00까지
- 나. 신청대상 : 사업장 또는 공장이 제주도에 소재한 수출기업
- 다. 신청방법 : ① 제주전자무역시스템(<http://jejutrade.or.kr>), ② 방문, ③ 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중 택1
- 라.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통상물류과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통상물류과(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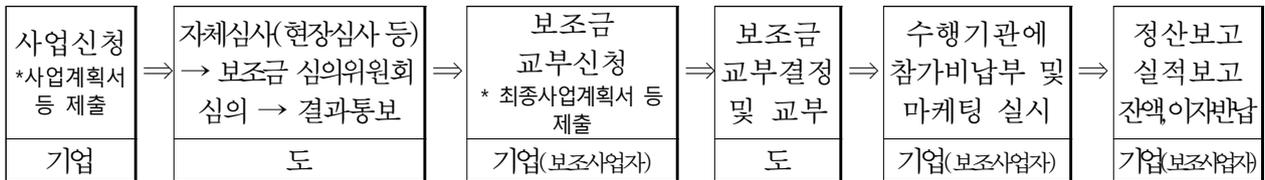
- 다. 신청서류 : ①지방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기업(단체)소개서 포함), ②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③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④지방세 납세증명서, ⑤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⑥가산점 증빙(인증서·지정서 등) 각 1부, ⑦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회원사 리스트 및 정관, 협동조합 회원사의 경우, 회원관련 증빙서류(해당시)

바. 문의처 : 통상물류과(☎064-710-2626)

4. 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
 - 심사기준 : 보조금 지원 적격 여부,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 결과 통보(선정기업에 개별 통보) : 2026년 2월말~3월초

5. 도 보조금 사업 추진절차



6. 유의사항

가.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 `23년도부터 보탬e시스템(<https://www.losims.go.kr>)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므로 제주은행 또는 농협은행의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개설 필요
- * 보조금 통장은 해당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1개 보조사업 당 1개 보조금 전용통장을 별도 개설 후 보탬e시스템 등록해야 자부담금 예치가 가능하며, 도는 자부담금 예치 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함

나.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보탬e에서 사업변경신청 및 승인 필요)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함

* 보조금 교부 전에 참가비를 납부한 경우, 보조금 교부 불가

다.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나는 때(12월)에 실적보고서를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관련 정보 공시(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름

마.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064-710-26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해외지사화 지원
- 사업기간 : 2026. . . ~ 2026. 12. 31.
- 사업내용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보조금액 : 천원

자부담액 : 천원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월별 일정)	세부 사업내용 (상세히 기재)	비고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 명칭과 단위를 명확하게 기재.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등 모호한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 명칭과 단위를 명확하게 기재.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등 모호한 표현 금지)

< 작성요령 >

-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세부사업명)을 기재
-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 비목 구분하여 기재
-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기재(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항목별 단가(원) × 단위(개, 명, 회, 부 등) = 000 천원
 - 산출내역 작성이 어려운 경우 유사견적서 등 설명자료를 증빙으로 첨부

기 업(단체) 소 개 서

[기업(단체)명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직 원 수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하여 ○○○○○○ 기틀 마련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첨부 요망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11.08 ○○○ 설립(창립) • '03.10.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12.0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5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p>(작성요령)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2~3건 기재. 주요사업이 많은 경우 별지로 추가</p>			
2026년 주요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p>(작성요령)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2~3건 기재. 주요사업이 많은 경우 별지로 추가</p>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의 수혜대상 선정 과정 및 지원 기간 내 연락·확인,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시책 안내 등
개인·기업 정보 수집 항목	회사명, 회사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수출실적, 매출 및 고용현황, 대표자 성명 및 담당자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팩스번호, 지방세 납입현황 등
보유이용 기간	5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 및 기업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 개인 및 기업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사업 성과 보고, 제주전자무역시스템, 수출역량진단시스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지원이력 관리 등에 활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명, 회사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수출실적, 매출 및 고용현황, 대표자 성명 및 담당자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팩스번호, 지방세 납입사항 등
제공 기간	준영구
제공받는 기관	중앙·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기업 지원사업 수행 및 운영기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 및 기업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 하